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년월일 : 2000. 8.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16호)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 (안 제3조제4항).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개정조례안 : 덧붙임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구	신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8. 6. 3. 법률 제5,546호)</p> <p>제5조의 3 (선출관리) ①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리한다.</p> <p>② (생략)</p> <p>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② (생략)</p> <p>③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2항·제14항,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규정은 교육감 선출에 이를 준용한다.</p> <p>④~⑦ (생략)</p> <p>제51조 (선설)</p>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 1. 28. 법률 제6,216호)</p> <p>제5조의 3 _____ (삭제)</p> <p>제28조 _____ (삭제)</p> <p>제51조 (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조직) ④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u></p> <p>3.~15. (생 략)</p>	<p>제3조 (조직) ④</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삭 제)</p> <hr/> <p>3.~1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이상기 의안담당 연승흠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156

시행일자 2000. 08. 09.

(경유)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교육감		지시	
접수	일자	2000. 8. 9.	결재	부교육감
	시간			기획관리과장
	번호	3615	공람	기획관리과장
처리과	기획관리과			의회담당
담당자				심사일
심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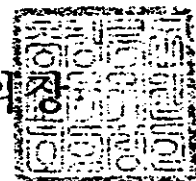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8. 8.)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17-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7-2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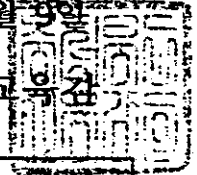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 (안 제3조제4항)
○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1.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